



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

Investment Policy Statement

2025

목 차

1. 개요	1
1-1. 자산운용지침의 개요	1
1-2. 자산운용지침의 목적	1
1-3. 기금의 개요	2
2.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	3
3.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	4
3-1. 자산운용 목적	4
3-2. 자산운용 원칙	4
4. 자산운용체계	5
4-1. 완전위탁 운용 체계	5
4-2. 의사결정 구조	5
4-3.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	6
5. 자금운용계획 수립	8
5-1. 자금수지 항목	8
5-2. 운용자금의 분류	8
5-3. 적정 유동성 규모	8
5-4. 만기별 자금배분안	9
6.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	10
6-1. 목표수익률	10
6-2. 허용위험한도	10

목 차

7. 전략적 자산배분	11
7-1. 투자가능 자산	11
7-2. 벤치마크지수	11
7-3. 자산배분 원칙과 방법	12
7-4. 자산배분안 재조정	12
8. 위탁운용	13
8-1. 완전위탁 운용 정책	13
8-2. 완전위탁 전담주간운용사 선정기준 및 관리방안	13
9. 위험관리	14
9-1. 위험관리 원칙	14
9-2. 위험 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	14
9-3. 위기상황 조기경보	16
9-4. 위험관리 보고체계	16
9-5. 외환관리정책	16
10. 성과평가	17
10-1. 평가원칙	17
10-2. 성과평가의 기준	17
10-3. 성과평가 결과 보고	17
11.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	18
12. 감사 및 공시	19
13. 자산운용 담당자 행위준칙	20

[별첨] 2025년 자산운용지침 주요 내용

1. 개요

1-1. 자산운용지침의 개요

-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범죄피해자보호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의 자산운용·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.
- 본 지침은 연기금투자폴 완전위탁운용 전담주간운용사에서 작성하여 투자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경제동향 및 금융시장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본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구성원에게 적용되고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되고 준수되어야 한다.

1-2. 자산운용지침의 목적

-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의 자산운용·관리에 적합한 자산운용정책, 자산운용목표 및 제한사항,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의 기준을 확립한다.
- 본 지침은 자산운용에 관한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금자산의 운용원칙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-3. 기금의 개요

- 기금은 안정적이며 확대된 재원을 바탕으로 예측치 못한 범죄피해발생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하며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(이하 기금법)에 의해 2011년에 최초로 설치하였다.
- 기금의 주된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(벌금수납액 : 매년 집행된 벌금에 6%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)과 자체수입금(정부가 대위하여 취득한 범죄자에 대한 구상금,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한 현금 등),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이다.

2.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

- 기금의 자산운용은 기금법 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.
-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위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자산운용지침, 위험관리기준 등의 적용을 받는다.
- 다만, 기금이 연기금투자폴 완전위탁형 참여 시 국가재정법 제76조 ①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재정부 투자폴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, 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기금투자폴 관련 기획재정부 훈령인 「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연기금투자폴 운영규정」과 전담주간운용사 내 투자폴 업무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3.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

3-1. 자산운용 목적

- 기금의 자산운용은 기금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성, 유동성,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-2. 자산운용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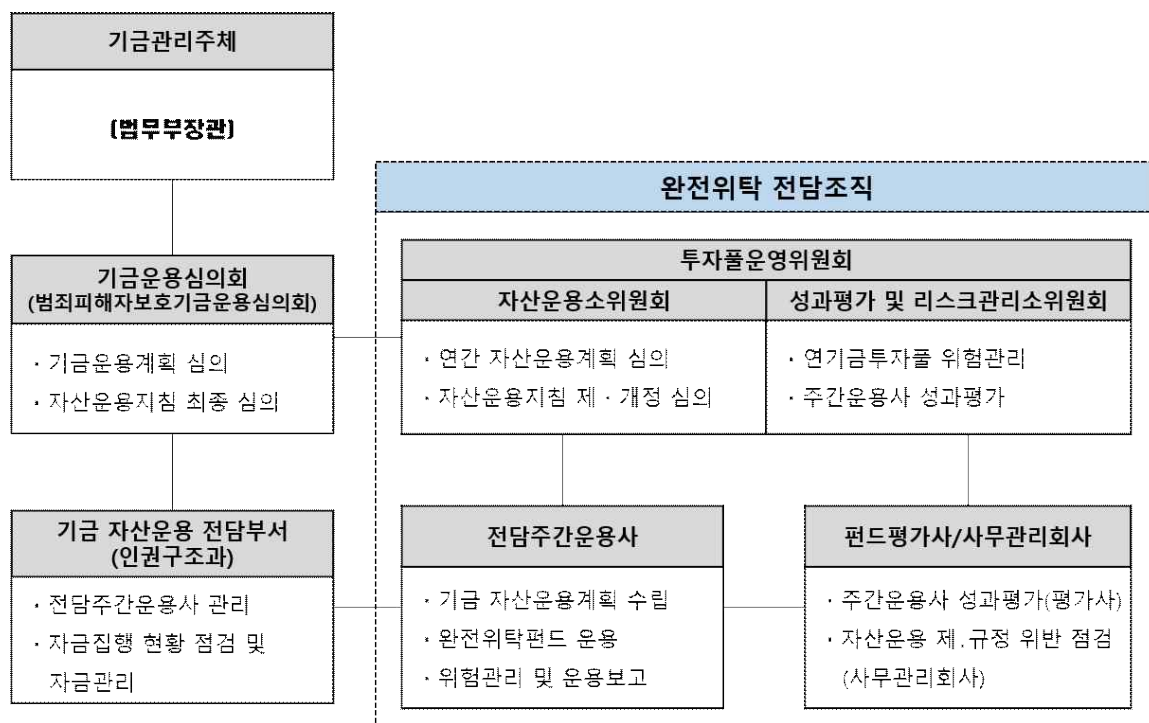
-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안정성, 유동성, 수익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환경정책, 금융정책 및 기타 정부정책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한다.
- 기금의 운용은 허용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.
-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.
- 기금 설치목적, 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 공공성을 도모한다.
-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기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한다.

4. 자산운용체계

4-1. 완전위탁 운용 체계

-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운용지침 심의 및 자산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기금투자플 ‘투자플운영위원회(자산운용 소위원회,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 소위원회)’에서 담당한다.
- 완전위탁 전담주간운용사는 투자플운영위원회의 관리·감독하에 기금의 연간 자산운용전략의 수립과 투자실행을 실시한다.

4-2. 의사결정 구조



4-3.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

- 자산운용 시 요구되는 “견제와 균형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(1) 투자폴운영위원회(자산운용,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 소위원회)

- 기금은 자산운용의 투명성,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기금투자폴 완전위탁형 제도 참여 시, 국가재정법 제76조 ①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재정부 투자폴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.
-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점검한다.
 - 자산운용지침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-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금융상품의 투자에 관한 사항
 -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
 - 기타 투자폴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(2) 기금 자산운용 전담부서

- 기금은 연기금투자폴 완전위탁운용 전담주간운용사를 선정하고 여유자금 운용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관리하며, 정기적으로 기금의 수입·지출 등 자금 변동 정보를 전담주간운용사에 제공한다.
- 전담주간운용사의 업무 수행기간은 4년이며, 2년마다 전담주간운용사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. 또한, 필요 시 투자폴운영위원회에 전담주간운용사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.

(3) 전담주간운용사

○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주간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① 완전위탁형 기금 운용전략 수립

- 기금 여유자금 투자정책 수립
- 적정 유동성 추정 및 전략적 자산배분
- 연간 자산운용계획 및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수립

② 완전위탁형 기금 운용실행

-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의 허용범위 내 전술적 자산배분
- 투자자금의 통합집합투자기구별 배정
- 정기예금 등 만기보유 자산의 직접 운용

③ 완전위탁형 기금 위험관리 및 기금에 운용성과 보고

④ 기타 관계 법령 및 연기금투자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

(4) 펀드평가사/사무관리회사

○ 완전위탁형 성과평가는 펀드평가사에서 수행하며 제·규정 위반여부 점검 (컴플라이언스) 업무는 사무관리회사에서 수행한다.

5. 자금운용계획 수립

5-1. 자금수지 항목

- 기금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
수입항목	지출항목
■ 정부출연금 ■ 구상금 ■ 출연금 ■ 기금운용수익금	■ 주요사업비 ■ 기금운영비 ■ 자금운용

5-2. 운용자금의 분류

- 기금의 운용자금은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.

자금 분류		내 용
단기 자금	현금성자금	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금
	유동성자금	운용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금
중장기자금 (총 운용자금 - 단기자금)		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금

5-3. 적정 유동성 규모

- 적정 유동성 규모란 당해연도 사업대기성자금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(buffer)으로, 유동성 위험을 대비하고 기금운용의 기본목표인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준으로 보유한다.

< 적정 유동성 산출 절차 >

- 1단계 : 기금의 과거 자금 유입과 지출의 추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 파악
- 2단계 :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여 일정 확률로 준비해야 하는 적정 유동성 규모의 목표수준(Target Level) 설정
- 3단계 : 당해 사업환경을 고려해 적정 유동성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그 규모를 자금운용 계획에 반영
- 4단계 : 향후 1년 내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는 여유자금에서 일부를 적정 유동성 규모로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자금은 중장기로 운용

- 적정유동성 규모 산정결과 및 수치는 [별첨]에서 별도 명시한다.

5-4. 만기별 자금배분안

-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연간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한 후, 자금 유출입 규모 및 적정 유동성 규모를 고려하여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한다.
- 만기별 자금배분안 추정 결과 및 수치는 [별첨]에서 별도 명시한다.

6.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

6-1. 목표수익률

-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“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”로 정의하며, 이는 자산배분안이 충족하여야 할 요구수익률의 개념으로 자산배분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.
-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사업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1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단, 목표수익률은 금융시장 변화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운용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투자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- 목표수익률의 설정 방안과 수치는 [별첨]에서 별도 명시한다.

6-2. 허용위험한도

-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(수익률 감소 등)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.
- 기금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로 설정한다. Shortfall Risk는 자산운용으로 인해 특정 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을 말하며,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(안)은 사전에 설정한 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하여야 한다.
-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방안과 수치는 [별첨]에서 별도 명시한다.

7. 전략적 자산배분

7-1. 투자가능 자산

- 기금은 전담주관운용사에 설정한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(이하 ‘완전위탁통합펀드’라 한다)를 통해 여유자금을 운용하며, 완전위탁통합펀드의 운용대상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		투자가능 자산
단기	현금성		MMDA, MMF, 예금 등
	유동성	확정금리	MMDA, 정기예금, CD, RP 등
		실적배당	수익증권(채권형)*, CP(예금담보 ABCP 포함)
중장기	확정금리		정기예금, 수익증권(매칭형)* 등
	실적배당		수익증권(채권형, 혼합형, 주식형, ELF, 대체투자)*

*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(펀드)를 의미함

7-2. 벤치마크 지수

- 벤치마크지수는 자산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이용하기 위해 자산군별로 사전에 설정된 지수로 명확성, 투자가능성, 측정가능성, 적정성을 갖추고 시장전망을 반영해야 한다.
- 단, 사전에 설정한 벤치마크지수는 기금의 고유한 업무 또는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투자폴운영위원회의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.
- 구체적인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는 [별첨]에서 별도 명시한다.

7-3. 자산배분 원칙과 방법

-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안을 선택하여 운용한다.
- 자산배분안은 자산별 기대수익률, 위험(표준편차), 상관관계를 기초로 기금의 특성에 맞는 제약조건을 추가로 고려한 최적자산배분안을 설정하도록 한다.
- 적절한 자산배분 모형을 이용하여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만족시키는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비중을 산출하며, 자산배분 모형으로는 평균-분산 최적화(Mean Variance Optimization), 블랙 리터만(Black-Litterman) 등 기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산배분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전략적 자산배분 결과 및 허용범위는 [별첨]에서 별도 명시한다.

7-4. 자산배분안 재조정

- 금융시장 환경 변화·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시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단기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 비중을 허용범위 내에서 재조정(Rebalancing) 한다.

8. 위탁운용

8-1. 완전위탁 운용 정책

- 기금이 연기금투자폴 완전위탁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전체 여유자금을 전담주간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만, 기 투자상품의 환매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높거나 부실자산 등으로 완전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투자폴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기금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.
- 기금이 불가피하게 전담 주간운용사 이외의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「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」을 적용하여 운용한다.

8-2. 완전위탁 전담주간운용사 선정기준 및 관리방안

- 기금은 전담주간운용사의 보고내용,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의 투자내역, 수익률, 전담주간운용사 인력 변화 등을 점검하며 매 2년마다 전담주간운용사를 변경 할 수 있다.
- 또한, 전담 주간운용사의 지속적인 성과부진,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운용규정 위반 등 교체 사유 발생 시 투자폴운영위원회에 전담주간운용사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.
- 기금이 전담주간운용사 선정 시 적용 기준은 기금 내부의 「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」 또는 투자폴운영위원회 권고안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9. 위험관리

9-1. 위험관리 원칙

- 기금의 위험관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과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단, 연기금투자폴 완전위탁운용 방식으로 위탁하는 경우 완전위탁운용 전담주간운용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담주간운용사에서 위험관리를 수행하며, 필요 시 기금 특성을 반영한 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.
- 완전위탁운용의 위험관리 세부사항은 ‘전담주간운용사 위험관리규정 (관련 기준 및 지침 포함)’ 및 [별첨]을 따른다.

9-2. 위험 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

(1) 유동성 위험

- 유동성위험은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(사업비 지출)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.
- 관리방법
 -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정된 적정유동성 규모를 현금성자산으로 유지하고 적정유동성 비율,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, Liquidity Coverage Ratio) 등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한다.
 - 운용상품은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, 만기 전 환매를 통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며, 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운용상품부터 환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한다.

(2) 신용위험

- 신용위험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채권 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 (Default loss)위험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이다.

- 관리방법

-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경우에는 편입되는 자산의 종목, 편입자산의 신용등급, 만기구조 및 구성비율 내역을 점검하여 편입자산의 부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한다.

(3) 시장위험

- 시장위험은 주가, 금리,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한 운용 자산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다.

- 관리방법

-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Market VaR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소진율을 점검하며, 허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련 규정의 ‘위험단계별 대응방안’에 따라 포트폴리오 변경 및 자금 회수 등을 통하여 시장위험을 관리한다.

※ VaR(Value at Risk)의 정의 :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

(4) 운영위험

- 운영위험은 자금운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체계, 시스템 등의 내부 통제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다.

- 관리방법

- 정기 및 수시보고 시스템을 통한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담당자는 일별로 제규정 준수 여부 및 운용결과를 확인하고 결제 내역 및 회계처리를 점검하여 운영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.

9-3. 위기상황 조기경보

-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조기경보 지표를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한다.
- 조기경보지표 및 관리방안 세부 사항은 ‘전담주간운용사 위험관리규정’을 따른다.

9-4. 위험관리 보고체계

- 전담주간운용사는 위험관리 현황 및 위험수준을 정기적으로 기금에 보고한다. 또한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및 투자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. 다만,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해 전담주간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사전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.

9-5. 외환관리 정책

- 외환관리 정책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및 환 손실로부터 기금 보호를 목표로 한다.
- 해외 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환 헤지를 할 수 있으며, 헤지 이외의 목적에 의한 외환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.
- 해외채권의 헤지비율은 100%, 해외주식은 환오픈(헤지비율 0%)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 상황에 따라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10. 성과평가

10-1. 평가원칙

-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평가는 연 4회 이상 분기마다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담주간운용사는 정기적으로 기금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운용성과를 보고한다.

10-2. 성과평가의 기준

- 성과평가 시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, 자산의 성격에 따라 평잔수익률 또는 장부가평가를 할 수 있다. 또한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을 산출하여 평가에 이용한다.
- 자산군별 기준수익률은 사전에 설정한 벤치마크지수의 사후적수익률을 사용하며 전체 자산의 기준수익률은 자산별 투자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.
- 기준수익률 산출 관련 세부 내용은 기금의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따른다.

$$\text{전체 기준수익률} = \sum (\text{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} \times \text{투자자산별 투자비중})$$

10-3. 성과평가 결과 보고

- 외부성과평가기관(펀드평가사)은 전담주간운용사의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투자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-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자산배분 비중 조정과 전담주간운용사 평가에 반영(feedback)하도록 한다.
- 기금은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.

11.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

-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책임·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.
-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에 있어 기금의 이익 최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, 환경, 사회책임,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책임투자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신의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.
- 단, 기업 가치 증대 등으로 인한 기금의 이익 제고의 목적 이외에 경영권 참여 등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.

12. 감사 및 공시

- 자산운용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및 계획과의 부합 여부
 -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
 - 그 밖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여유자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지침 등을 공시한다.

13. 자산운용 담당자 행위준칙

- 기금의 자산운용 및 전담주간운용사 관련업무 담당직원(이하「자산운용담당」이라한다)은 기금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관계법령, 기금운용관련 제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, 기금 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,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.
-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·유지하여야 한다.
-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,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,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금리입찰, 수수료덤핑,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익률 약정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.

[별첨] 2025년 자산운용지침 주요 내용

1. 2025년 자산배분 계획 총괄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		2024년		2025년		허용범위
			말잔	비중	예상 평잔	비중	
단기	현금성	3개월 미만	5,380	10.12	5,330	10.13	-18.26~+6.96
	자금	적정유동성			14,275	27.12	
	유동성	6개월 미만	32,475	61.06	1,094	2.08	-6.96~+18.26
	자금	12개월 미만			12,076	22.94	
단기자금 소계			37,855	71.17	33,775	62.27	-
중장기	확정금리		-	-	-	-	-
	국내채권		15,333	28.83	19,357	36.78	-17.86~+0.95
	해외채권		-	-	-	-	-
	국내주식		-	-	499	0.95	-0.95~+17.86
	해외주식		-	-	-	-	-
중장기자금 소계			15,333	28.83	19,856	37.73	-
총계(운용가능자금)			53,185	100.00	52,631	100.00	-

2. 목표수익률 : 2.94%

(단위: %)

구 분	산출기준	목표수익률	
		'24년	'25년
전 체	실질가치유지를 위한 요구수익률	3.56	2.94
단 기	대표 단기금융자산 기대수익률	3.50	2.82
중장기	전체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수익률	3.70	3.16

[별첨] 2025년 자산운용지침 주요 내용

3. 허용위험한도

구 분	허용위험한도	
	‘24년	‘25년
전 체	Shortfall Risk(원금, 1년) ≤ 5.0%	Shortfall Risk(원금, 1년) ≤ 5.0%
단 기	Shortfall Risk(원금, 1년) ≤ 1.0%	Shortfall Risk(원금, 1년) ≤ 1.0%
중장기	Shortfall Risk(원금, 1년) ≤ 5.0%	Shortfall Risk(원금, 1년) ≤ 5.0%

4. 벤치마크지수

구분			벤치마크지수
단기	현금성		MMF 시장평균 수익률
	유동성	확정금리	한국은행 고시 정기예금(6개월~1년) 금리
		실적배당	KIS 국고채 3개월~1년
중장기	확정금리		한국은행 고시 정기예금(1~2년) 금리
	국내채권		KIS 국고채 2~3년 지수
	국내주식		KOSPI
	해외채권		Barclays Global Aggregate(Hedged KRW)
	해외주식		MSCI ACWI(Unhedged KRW)
	대체투자		KRX 리츠 TOP 10 지수

[별첨] 2025년 자산운용지침 주요 내용

5. 위험관리

구분	위험 종류별 관리방안	한도
유동성 위험	• 월별 자금수지 분석 및 적정유동성 관리	적정유동성 이상
시장 위험	• 월간 Market VaR 측정 및 관리 - 95% 신뢰수준, 보유기간 1개월	전체 : 0.85% 단기 : 0.57% 중장기 : 0.91%
신용 위험	• 전담주간운용사 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위험관리 - 집합투자기구 내 투자증권 및 발행사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 -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증권 보유 및 매매내역 - 채권평가사 평균수익률과 매매수익률 간 차이	채권 : A- 이상 기업어음(CP) : A2- 이상
운영 위험	• 제·규정 준수 여부 일일 모니터링 • 운용결과 확인, 결제내역 및 일일 회계처리 점검	-